

- 2026년도 제5차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 공개 정보

- 공개일 : 2026. 5. 22.(금)
- 공개방법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www.gg.go.kr/audit)
 - (메뉴) 도민에게 알립니다 → 공지사항

□ 취업심사 결과

- 심사일 : 2026. 5. 19.(화)
- 심사안건 : 총 10건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심사 등)
- 심사결과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건에 대하여 '업무취급불승인'으로, 9건에 대하여 '취업가능'으로 결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2025년 하반기에 임의취업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으며, 그 외 단순집행적 업무종사자 등 23명에 대하여는 심사면제 및 과태료 면제를 결정함.
- 심사내역

(1)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심사

연번	퇴직 당시			취업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김포시	지방서기관	2024.6월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2026.5월 말	업무취급 불승인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사유 불인정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연번	퇴직 당시			취업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용인시의회	지방서기관	2025.12월	(주)에스케이에코 엔지니어링 (계약직/프로)	2026. 4. 23. *우선취업승인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경기도	지방서기관	2024.12월	(주)동남종합건설 (소방안전관리자)	2026. 5. 1. *우선취업승인	취업가능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2025년 하반기 일제조사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연번	퇴직 당시			취업		심사결과	결정사유
	소속	직급	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광명시	지방과학기술서기관	2025.6월	(주)에스씨월드 (과장)	2025.7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2	평택시	지방기술서기관	2022.12월	(주)수자원기술 (부장)	2025.12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3	수원 남부소방서	소방경	2023.10월	(주)서림주택관리 (설비과장)	2025.11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4	수원 남부소방서	소방위	2024.2월	(주)세이프원 (시설대리)	2025.8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5	안양소방서	소방경	2024.12월	(주)서림주택관리 (방재과장)	2025.9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6	시흥소방서	소방경	2022.12월	(주)우리관리 (주임)	2025.9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7	시흥소방서	소방경	2024.8월	(주)맥서브 (방재과장)	2025.9월	취업가능 및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8	용인소방서	소방령	2025.6월	(주)동명씨앤아이 (시설과장)	2025.11월	심사면제* 및 과태료 부과	이전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심사 면제자(단순집행적 업무 등) 23명 제외

*해당 심사면제 사유: 이전 취업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으나, 신청서의 취업예정일보다 먼저 취업한 사실이 확인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 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취업승인)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 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